

미국의 품질개선 노력과 우리의 활용방안



유 상 철

대한벌크터미날(주)
운영부장

곡물 품질 개선법

미국의 곡물품질 개선 노력의 하나로 지난해의 워크샵(Workshop)전 및 그 실시 내용 소개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곡물 품질개선법과 대만의 곡물 구매 계약 내용을 소개하여 참고하고자 한다.

1987년 5월1일부터 시행되는 곡물 품질 개선법은 수입국들의 품질에 대한 불평을 해소하고 대외 무역거래를 근본적으로 잡물과 이물질 또는 먼지의 함량이 적은 곡물을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법은 시행하기전부터 미국내의 곡물생산자, 무역거래자 및 기타 곡물 전문가들로부터 곡물유통구조를 모르는 정치적 입법이라고 맹비난을 받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기도 한다. 앞으로 워크샵의 건의와 FGIS의

검토는 계속 되겠지만 우선 주요골자를 보면 FGIS로 하여금 곡물 해충피해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지난호워크샵의건의대로1988년 5월1일부터 5,000부셀에 바구미 또는 다른 해충 구분없이 3마리 이상일 경우에 해충피해 곡물로 처리키로 함)대두의 단백질, 유량함량, 유리지방산 등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을 정식 등급표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하도록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중요한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일단 수거 분리한 먼지를 다시 원 곡물속에 넣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또 한가지는 역시 일단 수거 분리한 잡물(dkg)과 이물질을 곡물에 재혼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단 87년 12월31일까지 잠정적으로 곡물을 미국내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그

실수요자가 시장에 되팔지 않고 자기가 직접 사용 또는 가공할 때와 수출사이로의 on-line정선시설에서 과도하게 정선되었을 때 품질을 균일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시 넣게 할 수 있는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수입국의 수요자에게 근본적으로 깨끗한 곡물을 보내기 위해서 취해진 이 조항이 사실은 미국내에서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

그 첫째는 현재 미국의 모든 집진시설이 분리한 먼지를 다시 곡물속에 넣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별도의 먼지탱크를 만드는 등 시설개조비용만도 수천만불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비용은 먼지를 다시 처리하는 비용은 계산하지도 않은 것이다. 정말로 아이러니

곡물의 품질문제는 생산과정에서 제일 먼저 고려를 해야 할 일이지만 일단 생산된 곡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품질개선은 향상될 수 없다. 현재 미국에서도 수거한 먼지를 원곡물에 섞지 못하게 하는 방안과 수거분리한 잡물과 이물질은 곡물에 재혼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칼한 문제는 먼지를 별도로 처리한다고 해서 정말로 곡물의 품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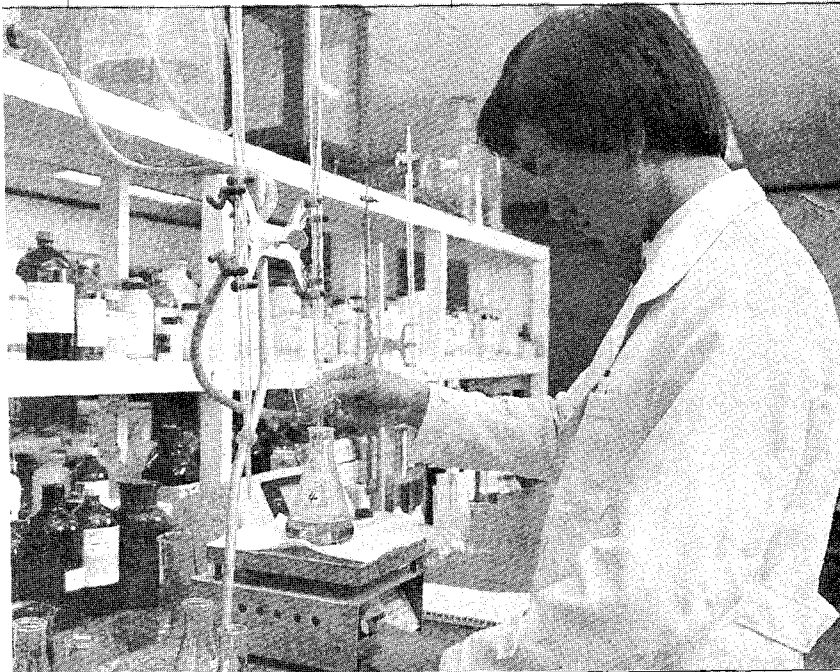
먼지처리를 잘함으로써 화재나 먼지 폭발에 대한 안전장치는 될 수 있지만 이 법이 농가의 사이로로부터 수출항 사이로에 이르기까지 몇단계를 거쳐서 이동되기 때문에 어떤 사이로에서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하여 아예 집진기를 가동하지 않거나 그 용량을

낮춘 상태에서 가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려하는 이도 있다.

지금 미국의 각 사이로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하기에 부심하고 있으며 어떤 사이로에서는 수거한 먼지를 펠렛을 만들어 사료용으로 재 사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고 또 어느 사이로에서는 최근 연구검토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대두유지의 살포를 계획하는 곳도 있다.

현재 FGIS는 곡물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대두유 등을 살포하는 것을 승인할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단지 살포제로 쓰이는 기름은 FDA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여야 하는데 사용가능한 것으로 대두유, 대두레시틴 및 식물성 기름 등 식용유 종류이다.

이렇게 처리된 곡물은 첨가제의 종류와 표본채취 및 계량 전에 첨가했는지 후에 첨가했는지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곡물검사원은 첨가제의 사용으로 곡물의 무게가 증가될지도 모른다는 주의서를 부착하도록한다고 한다.



또 한가지 얽히고 있는 문제는 잡물과 이물질을 곡물에 재혼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반하여 파립(BC)의 혼입은 허용하고 있는 데 있다.

옥수수경우에 현재 파립(BC)과 이물질(Fm)은 12/64"체를 통과하는 모든 물질과 체위에 있는 옥수수가 아닌 모든 것으로 보통 옥수수 조각, 먼지, 해초씨, 옥수수 속대 부스러기, 등이 혼합되어 있어서 파립과 이물질을

는 것이고 이물질은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두 항목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본다.

위크샐은 12/64"체는 통과하고 8/64"체에서는 위에 남은 옥수수 조각들을 파립으로 하고 8/64"를 통과하는 것과 (먼지, 아주 작은 옥수수 가루 등) 그외의 옥수수 아닌 물질은 이물질로 하자고 새로운 정의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다.

검정회사로 뉴오린스에 본사를 두고 세계 여러 도시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FGIS의 승인을 받아 선박의 청결검사, 하역감독 및 대행, 표본채취, 품질검사, 수량보증검사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개인 기업이다. 미국의 FGIS는 등급표상의 공식항목에 대해서만 검사 의무를 지기 때문에 등급표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 유량, 수분, 잡물 등은 민간검사기관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미국의 공급자와 대만의 구매자가 맺은 계약서 내용을 보면 기본 구매조건은 우리와 같으나 단지 품질검사와 그에 따른 보상방법이 특이하다.

신용장 결제용의 공인검사는 물론 FGIS검사증을 첨부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구매자의 비용부담(톤당 10센트)으로 티온빌로 하여금 선적시 품질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일정한 공식에 의거 구매자에게 보상해 주는 방법이다.

티온빌 검사용 샘플은 FGIS검사원이 채취한 것을 사용한다. 옥수수의 경우 2등급을 기준으로 무게, 수분, 손상립의 기준치와 티온빌 검사치의 차이에 C&F총액을 곱하여 그 해당액만큼 보상해 주고 있으며 파립과 이물질(BC Fm)은 매 Sublot당 같은 공식을 적용하고 있다. 대두의 경우에도 단백질, 유량함량, 수분, 이물질, 무게 등에서 기준치와 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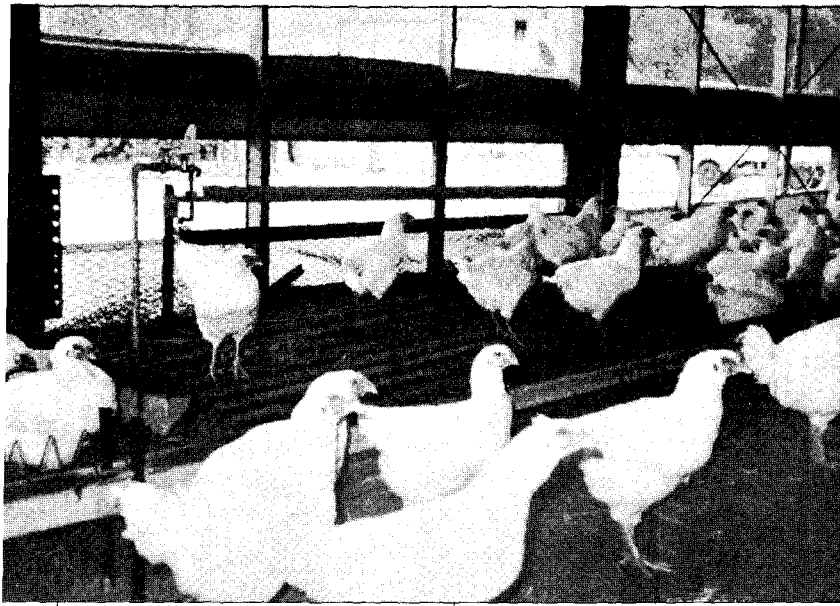
분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물질은 섞으면 안되고 파립은 섞어도 된다는 규정이 실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곡물 등급 규정상에 파립과 이물질을 분리하도록 하고 그 정의를 새로이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립은 깨진 옥수수조각이지만 옥수수 본래의 가치가 있

대만의 구매방법

대만은 옥수수 및 대두의 구매를 하면서 민간 검사기구인 티온빌(Thionville Laboratory)을 선적항의 검사회사로 지정하고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가격을 할인하는 독특한 계약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소개하고자 한다.

티온빌은 1961년 설립한



온빌검사치의 차이에 C&F가격의 일부를 곱하여 보상을 하고 있다. 티온빌 회사의 대표 폴 티온빌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보상받은 액수가 상당액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옥수수과 대두에 대한 공식을 한가지씩만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옥수수 파립이물질(BCFm) = (티온빌검사치-기준치) × 매 Sublot당C&F가격

우리의 활용 방안

년간 800만톤 이상의 곡물을 구매하는 대규모 수입국인 우리도 이제는 품질 문제를 비롯하여 구매방법의 개선, 선물시장의 활용 등 곡물에 대하여 더욱 연구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곡물을 구매하면서 단순히 몇등급이라고 정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구매자의 입장에서 특별한 용도에 적합한 필요한

사항들을 별도로 정하여 FGIS검사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민간 검사기구를 활용하여 계약에 반영시키는 방법도 관계 당사들의 검토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한가지는 현재의 계약조건이 선적항검사(loading port final)조건이기 때문에 도착항에서의 품질검사가 계약상으로는 의미가 없다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도착항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다면 공급상들이 한국행 곡물에 대하여 더욱 신경을 쓸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단지 도착후의 검사가 각 공장단위로 이루어진다면 이미 하역을 완료하고 상당기간 보관 및 소송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모선의 대표적인 표본을 검사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도착 즉시 하역과정에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곡물검사는 표본채취, 검사

장소, 검사과정, 방법 등이 FGIS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하고 검사에 쓰이는 장비와 기구도 공인을 받은 회사 제품이어야 하기 때문에 도착항에서 선적항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도 공인 검사기관을 만들어 공식적으로 검사를 하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국 FGIS검사원의 견해로는 도착항 하역과정에서 선적항과 똑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항해 및 하역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품질의 변화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일단은 검사방법이 FGIS규정대로 되어야한다는 것은 기본적이며 이의가 있을 때는 양하 30일내에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결과를 보내주면 FGIS에 보관되어 있는 해당 표본을 재검사하여 그 결과를 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한다고 한다.

보상문제는 거래당사자간의 협의사항으로서 FGIS는 검사결과만 통보할 뿐 분쟁을 조정하지는 않는다. 국가적인 차원으로 볼 때 도입곡물에 대한 꾸준한 검사와 정확한 검사자료를 확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보다 질 좋은 곡물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으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